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_	
람	



제 1230 호 2020. 4. 23.(목)

칙 규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3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4호[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λГ 卫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68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공 卫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325호[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10호[도시계획시설(소로3-231호선,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11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93, 소로3-224, 소로3-225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15호[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16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19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528호[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56**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건 (인)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령·조례·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
 -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 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 2. 대체징수결정
 -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 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 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 ·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

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제3호 예산집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공통사항

			기	안 및	전경	전결구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 5 실 무 자	당 자 담 당	실·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결재
3.	예산집행	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2억원 이하 집행					0	
		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 기타 1건당 1억원 이하 집행	기안			0		
		다.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0			
		라. 봉급, 수당, 여비, 공공요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0			
		마. 물품의 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	기안		0			

②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청	구의회	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회계책임관	행정지원국장	-	-	-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부과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총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	-	_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홍보실장	1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홍보실장	I	ı	-		
통 합 지 출 관	총무과장	1	-	_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의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	세입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지출업무담당	-	지출업무담당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지출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세 입 세 출 외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 외 공무원		
변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비고 1. 00담당: 팀장·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할 수 있음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그 밖의 관서
보건소・문화예술회관・동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부
8. 그 밖의 경비	전부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	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 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	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	전부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	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	전부
7. 울산광역시 북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부
8.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무관 및 징수관 위임범위, 부구청장 이하 집행품의 전결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 * (당초)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재무회계 규칙 재편
 - 행정안전부 훈령 중복규정 삭제, 훈령에서 위임한 조문만 존치
- 다. 징수관 및 재무관 위임범위, 집행품의 전결기준액 상향 (확대) 조정(제3조 ~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중 전 (인)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54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3조부터 제10조로 하고,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 1.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
- 2. 문화예술회관 정기대관
- 3.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1. 북구의회 의원
 - 2. 문화업무담당 국장
 - 3. 문화업무담당 부서장
 - 4. 문화예술회관장
 - 5.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공무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1항 중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를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 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
 - 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
 -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일자가 경합될 경우 조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⑥ 수시대관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 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1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 서식,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호	화예술회	회	관 화	원	가	입 입 선	 신청	서	결	담당자	담	당	부서정	}
(√ 丑/	시)회원종류	· F [□부·		 가족	 학	·생	재					
	 성 명	į L	단체	회비		: 견월일				 성	 - - - - - -		 굼 □여	
개	- · · · · · · · · · · · · · · · · · · ·				0									
인 회	' 집 전 호													-
원	휴대전회							*		나서비스(동의함	,	,		_
단	단체 명	ti d								동의임 표 자		544	<u>간임</u>	-
친	회 원 수	7			단기	체주소					'			
회	집 전 호	4												
원	휴대전회	4						*		ト서비스(동의함	`	,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Ď		원	접	수		증					-
성명	(단체명)					٩	直	기긴	<u>}</u>					
주	소													
회비	미납부액					회원수	2			구좌	·수			
	귀하(단체)끼 민합니다.	게서-	는 울산	광역	시 5	부구 문화	화예술	후회관	<u></u> 호	원으로	가입	되었	 었음을	
		<u></u>	울산굉	역시	시 녚	루구 듄	년 '화		월 회	^일 관장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 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집전화)
소속단체 (직장/학교)	
자격・면허증	
자원봉사 활동 경력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가능 시 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주	소									
사	단체	ll 명									
(^F 용 자	성명(디	배표자)				주민	등록변	크호			
<u>^</u> r	집전	변화									
	휴대	전화				*		•	SMS) 수 □동의'		부
행/	연 · 전/ 사의 명	칭									
· ·	연·전/ 사의 내	•									
사용기간		-	까지 :	년 년 일 시간 :	월		일()))분 <i>2</i>	시 시 소요		
Ò	십 장 료	-	□무료(: □유료	•				· 예상 인원	출연지 관람기		
사 용 기본시설			□공연점	상 □전시	실 □°	ㅑ외 공	3연장	□기티	+ (,)
시 설	부대	시설									
사용료감면사유		나유		루적이 아 또는 공약			화예술	건흥을	: 위한)	예술획	활동
7	험부서류	-	1. 행사; 2. 그 빆	계획서 '에 필요학	한 서류	-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2. 수집하려는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교유식별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4. 귀하께서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고유 식별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사용허가를 제한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 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문화예술회관의 검인이 없는 초대권 및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인신청은 공연일 로부터 15일 전에 입장금액,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 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 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 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 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 에서 하여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지	나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신청서

- 1. 사용자 주소 :
- 2. 성명(단체명):
- 3. 변청신청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	기본시설			
사중시설 	부대시설			
フ	타			
변경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전명	면)	(허가번호 :)
신 청	주소		
3 자	성명		

허가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행사일시 행사시간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뒷면)

허 가 조 건

-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3. 사용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파손, 분 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등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등 사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 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6. 조례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7.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 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제 기

접수번호			강좌번호	강좌명	
	성	명		수강료	30,000 24,000
신	주	소		1.9 3	15,000
 청	생년	월일		성 별	
	집	전 화			
자	휴다	H전화		※문자서비스(S □동의함 [,

※ 만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대리인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접	수	증	
기 수				
강좌명				
성명				

수강변경 및 취소

- 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 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별지 제9호서식 뒷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수강료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 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 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강 좌신청을 제한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1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대상	사용자 (신청자)			공연·전시 명칭			
<u>'</u> 건'강네'강	사용신청일			사용신청기간		~	
실제사용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은 행 명 :			계좌번호 :			
반 환 계 좌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	금액 : 금		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서식)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검인 신청서

1. 단체명:

2. 주 소: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공연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회)

6. 검인매수 :

7.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주 소: 성 명:

위의 사람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제○기 ○○반 ○개월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항 변경(제3조 ~ 제10조)
 - 조례규정 순서에 맞게 규칙조항 순서 변경
-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세부사항 신설
 - 위원회 기능(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제2조의2), 위원회 운영(제2조의3)
- 다. 사용・수강신청 및 허가사항 규정(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 라. 조문 변경(제8조제1항 중 "조례 제18조제1항"→"조례 제19조제1항")
- 마. 서식 내용 수정(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5호부터 제7호서식까지, 제9호서식,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및 제15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68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하천의 명칭
 동 첫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박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 점용 목적 및 개요

가설건축물 축조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시례동 244-20번지

나. 면적 : 18 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20. 04. 17. ~ 2023. 03. 1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6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04. 17.
- 2. 점용ㆍ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사방시설물 설치)
- 3. 점용·사용의 장소 : 매곡동 산180-1번지 일원
-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영구 : 10 m²

나. 기 간

- 영구 : 2020. 04. 17. ~ 2049.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공원녹지과)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7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96-7 외 1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공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	·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산 119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45-252	2020-04-23	이지역의지형에따라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9-08-20
2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511-7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16	2020-04-23	기존자연마을인차일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 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03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3길 41	2020-04-23	기존자연마을인약수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하였 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동 865-2	울산광역시 북구	가대서길 202	2020-04-23	가대동서쪽마을에위치하여 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1013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26-27	2020-04-23	기존마을자연부락명칭인황 토마을명칭을사용하여서도 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5-5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153	2020-04-23	매산초등학교와 월드메르디앙사이에위치하 여위치예측성확보	2011-08-16
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69-1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9길 6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8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중산 지구 25B 6L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2로 26	2020-04-23	인근매곡1로위치예측성및 연계성반영	2018-05-10
9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28-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5길 5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1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30-2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11로 25	2020-04-23	독립운동가 박상진 명칭 사용	2018-05-10
11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516-1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3길 21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12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516-2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3길 19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13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377-4 외 20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8길 18-16	2020-04-23	예로부터전해져내려오고현 재도사용중인마을이름으로 부여함.	2004-01-05
14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83-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1길 4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216-2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4길 9	2020-04-23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16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838-1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96-7	2020-04-23	관문성으로가는길이라하여 도로명을부여하였다.	2004-08-09
1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2 외 1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6 로 108	2020-04-23	호계·매곡지구명칭사용을 사용하여서도로명을부여함	2017-05-0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7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염포로 170	진장명촌지구 62B 4L	2020. 04. 23.	건축물멸실	
관문길 96-7	천곡동 838-1	2020. 04. 23.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u>www.bukgu.go.kr</u>)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u>www.juso.go.kr</u>)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4. 2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3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爿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5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산업구조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내지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1) 취약노동자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2)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연계사업
 - 3) 울산광역시 및 관련기관 협조 요청, 노사 관련 단체 의견청취
- 라. 사업 수행 방법(안 제5조)
- 마. 건강증진위원회(안 제6조)
 - 1) 위원회 설치 및 기능
 -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바. 재정지원 등(안 제7조)

3. 관계법령

가.「지역보건법」제3조제3항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1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울산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전화번호 : 052-241-7711, 팩스번호 : 052-241-7709

- 이 메일: kiwee81@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전문은 울산 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0. 4. 23.(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

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지도·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 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의 견 제 출

T 7101 111 C	찬성여부		Ol		¬	
조례안 내용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31,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호선, 소로1-3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양정동 47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31, 소로1-3)사업

나. 명 칭: 울산양정초등학교 일원(소로3-231, 소로1-3)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ਜੋ	비고	
	(노선명)	폭(m)	길이(m)	H 1/2
도 로	소로3-231호선	6.0	341.0	
도로	소로1-3호선	9.0	40.0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년 5월 7일까지)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593,소로3-224,소로3-225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93, 소로3-224, 소로3-225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33-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93, 소로3-224, 소로3-225호선)사업

나. 명 칭: 양정동 삼창아파트 일원(소로2-593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7	비고	
	(노선명)	폭(m)	길이(m)	
도 로	소로2-593호선	8.0	90.1	
도 로	소로3-224호선	6.0~6.2	19.2	
도 로	소로3-225호선	6.0	1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기 간: 실시계획일 ~ 2022.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년 5월 6일까지)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3.(목요일)

공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0 - 515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공직자등이 모든 외부강의 등을 사전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 (2020.5.27.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의 제한 규정 정비(안 제15조)
 -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고로 변경(안 제15조제2항)
 -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규정 **삭제**
 - 외부강의등 제한대상을 공무원으로 구체적 명시(안 제15조5항)

3. 관계법령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
- 나.「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
- 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제17조

공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주민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실
- 전화번호 : 052)241-7144, 팩스번호 : 052)241-710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등을"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했 개 정 아 혂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② ----- 사례금을 받는 외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부강의등을 -----등을 별지 제 12호서식에 따라 ----- 그 외부강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에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 <삭 제> 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 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 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 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 ----- 공무원의 외 <u>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 부강의등을 ----. ③, ⑥ ~ ⑧ (현행과 같음) ③, ⑥ ~ ⑧ (생 략)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 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u>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u>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 ③ 삭제 <2019. 11. 26.>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10조

□「공무원 행동 강령」

-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u>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 ③ 삭제 <2020. 4. 7.>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 2020. 5. 27.] 제15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전 동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됨('18.7.26.)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18.12.6.)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19.9.1.)에 따라 우리 구 자체감사 적용범위의 **감사대상기관에 '사업소'** 및 '북구 시설관리공단' 추가.

2. 주요내용

○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사업소, 북구 시설관리공단' 추가 및 '동주민센터' 삭제 (안 제2조제1호)

3.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4. 개정규칙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 소통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소통실 전화 : 052)241-7142 팩스 : 052)241-7269】

6. 그 밖의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의회사무과, 구 직속기관, 동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본청, 의회사무과,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북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4. 23.(목요일)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2조(적용범위)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	1
다) 본청, 의회사무과, 구 직속기관,	본청, 의회사무과, 구 직속기관,
<u>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u>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북구 시설
	<u>관리공단</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를 위한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공고

- 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실시계획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88, 소로2-90호선)사업

나. 명 칭: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로2-88, 소로2-90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	7	비고	
	(노선명)	폭(m)	길이(m)	H 12
도 로	소로2-88호선	8.0~10.0	58	
도 로	소로2-90호선	8.0~10.0	39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기 간: 실시계획고시일 ~ 2022. 12.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 7. 열람기간: 공보게재일로부터 14일간 (2020년 5월 6일까지)
-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052-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23.(목요일)

곳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0 - 528 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관내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 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설치목적
 - O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3. 사 업 명: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고정식 CCTV 설치
-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bukgu.ulsan.kr)

- 5. 공고기간 : 2020. 4. 23. ~ 2020. 5. 13. (20일간)
- 6. 설치예정장소

연번	설치예정장소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2길32-1(신천동)	
2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8길 2(연암동)	
3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24(화봉동)	
4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16(정자동)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 다.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라. 제출방법
 - o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연암동)
 - o 팩스: 052-241-7809
-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바.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052-241-7804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의견 제출서										
사	업 명	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설치							
6) 7)	제출자	성 (개인	명]/단체)					생년월일		
의 선	세물사		는 소					전화번호		
설치	미예정위	치			검토	트의견	(의견제	출 내용)		
	21] 중L 22 크1	7) H		Hl-710 C	· CTI	서리시	키 긔 긔		لما ما	거 ㅇ
			법누기	방시흥 (CIV	설시와	반던이	·여 위와 같	발이 의	선출
제	출합니다	斗.								
				2020	년	월	일			
					저] 출 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